

定 款

신 품 제 약 주 식 회 사

신평제약주식회사 정관

제정 : 1986. 7. 01.
개정 : 1989. 4. 28.
1989. 8. 25.
1989. 10. 04.
1990. 8. 25.
1991. 8. 27.
1995. 3. 17.
1996. 3. 15.
1997. 3. 14.
1999. 3. 19.
2000. 3. 17.
2001. 3. 23.
2002. 3. 15.
2003. 3. 14.
2009. 3. 20.
2010. 3. 19.
2011. 3. 18.
2012. 3. 23.
2014. 3. 21.
2016. 3. 25.
2019. 3. 29.
2020. 3. 27.
2021. 3. 31.
2022. 3. 25.
2024. 3. 29.
2026. 3. 30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

이 회사는 신평제약주식회사라 하고 영문표기는 "Shin Poong Pharm. Co., Ltd."로 한다.

(2010.03.19 개정)

제 2 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의약품, 의약부외품, 화장품, 의료용구, 위생용품, 화공약품, 의약품등의 제조업, 소분업 및 판매업
2. 식품, 인삼제품등의 제조업, 소분업 및 판매업
3. 수출입업 및 판매업
4. 장학사업
5.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
6. 부동산임대업 (2001.03.23 신설)
7. 학술연구등 연구개발업 (2021.03.31 신설)
8.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 연구, 제조 및 판매업 (2026.03.30 신설)

제 3 조(본점 및 지점 소재지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의 방법)
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shinpoong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주로 한다. (2011.03.18 개정)

제 6 조(1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 (2011.03.18 개정)

제 7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(2019.03.29 개정)

제 8 조(회사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는 설립 시에 보통주식 928,546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9 조(주식의 종류)

① 이 회사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
(2012.03.23 개정)

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(2012.03.23 신설)

제 10 조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. (2012.03.23 개정)

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% 이상 15%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. (2012.03.23 개정)

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 (2012.03.23 개정)

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 (2012.03.23 개정)

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일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. (2012.03.23 개정)

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(2012.03.23 개정)

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. (1997.03.14 개정)

제 11 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
(2014.03.21 개정)

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
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,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6.03.25 개정)

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. (2016. 03.25 개정)
- ② 제 1항 제 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 (2016.03.25 개정)
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(2016.03.25 개정)
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(2016.03.25 개정)
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(2016.03.25 개정)
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(2016.03.25 개정)
 5. 삭 제
 6. 삭 제
 7. 삭 제
 8. 삭 제
 9. 삭 제
 10. 삭 제
- ③ 제 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, 제 2호, 제 2호의 2,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 (2014.03.21 개정)
- ④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(2014.03.21 개정)
-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(2014.03.21 개정)
-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(2014.03.21 개정)
- ⑦ 회사는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 (2014.03.21 개정)

제 11 조의 2 (신주의 배당기산일)

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(1996.03.15 신설)

제 11 조의 3 삭 제

제 11 조의 4(주식매수선택권)

① 회사는 임·직원(상법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 (2019.03.29 개정)

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,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(2009.03.20 개정)

1. 삭 제

2. 삭 제

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④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를 초과할 수 없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. (2009.03.20 개정)
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
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(2009.03.20 개정)

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.

⑦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3. 회사는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이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준용한다. (2003.03.14 신설)

제 12 조 삭 제

제 13 조 삭 제

제 14 조 삭 제

제 15 조 삭 제

제 16 조 삭 제

제 17 조 삭 제

제 18 조 삭 제

제 19 조(명의개서대리인)

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의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(2010.03.19 개정)

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
(2019.03.29 개정)

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(2009.03.20 개정)

제 20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0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(2019.03.29 개정)

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.

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 (1990.8.25 개정)

제 3 장 사 채

제 21 조(사채의 발행)

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(2012.03.23 신설)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 (2012.03.23 신설)

제 21 조의 2 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. (2014.03.21 개정)
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 (2019.03.29 개정)

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 (2019.03.29 개정)

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-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. (1996.03.15 개정)

제 22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(2014.03.21 개정)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 (2019.03.29 개정)
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. (2019.03.29 개정)
-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 (2014.03.21 개정)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
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
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. (2014.03.21 개정)

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⑥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. (1993.03.15 개정)

제 22 조의 2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 19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과에 준용한다. (2019.03.29 신설)

제 22 조의 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2019.03.29 신설)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23 조(소집)

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.

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.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4 조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5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목적, 장소,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(2009.03.20 개정)

② 이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 191 조의 10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·지점, 명의개서대행회사, 금융감독위원회,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 (2001.03.23 개정)

제 26 조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7 조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8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 (1995.03.17 추가신설)

제 29 조(주주의 의결권)

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9 조의 2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 (1995.03.15 신설)

제 29 조의 3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 30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 1 항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1 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(2022.03.25. 개정)

제 32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 (1996.03.15 개정)

제 5 장 이사·이사회

제 33 조(이사의 수)

-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(2025.12.01 개정)
- ② 삭 제 (2020.03.27 삭제)

제 34 조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(2020.03.27 개정)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개정)
-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(2000.03.17 신설)

제 35 조(이사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② 삭제 (2020.03.27 삭제)

제 36 조(이사의 보선)

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2020.03.27 개정)

② 삭제 (1990.08.25)

③ 독립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(2025.12.01 개정)

제 37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

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등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 (2009.03.20 개정)

제 38 조(이사의 직무)

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여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8 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

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개정)

제 38 조의 3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)

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독립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(2025.12.01 개정)

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2020.03.27 개정)

제 39 조 삭제 (2020.03.27 삭제)

제 40 조 삭제 (2020.03.27 삭제)

제 41 조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2020.03.27 개정)

제 42 조(이사회 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과반수 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 의 2(회사 회 유 용 금 지) 및 제 398 조(자 기 거 래 금 지)에 해당 하는 사안 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 의 2 이상 의 수로 한다. (2012.03.23 개정)
- ②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 가 있는 자는 의결 권을 행 하지 못 한다.
- ③ 이사회 의 의장 은 대표 이사 로 하며, 대표 이사 가 유 고 시 에 는 제 38 조 제 2 항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.
- ④ 이사회 는 이사 의 전 부 또는 일 부 가 직 접 회 의 에 출 석 하지 아 니 하고 모 든 이사 가 음 성 을 동 시 에 송 수 신 하는 통 신 수 단 에 의 하여 결 의 에 참 가 하는 것 을 허 용 할 수 있다. 이 경 우 당 해 이사 는 이사회 에 직 접 출 석 한 것 으 로 본 다. (2012.03.23 신설)

제 43 조(이사회 의 의사록)

이사회 의 의사 에 관 하여 의사록 을 작 성 하고 의 장 과 출 석 한 이사 가 기 명 날 인 또는 서 명 을 하여 본 점 에 비 치 한다. (2020.03.27 개정)

제 43 조 의 2(위 원 회)

- ① 이 회사 는 이사회 내 에 다음 각 호 의 위 원 회 를 둔 다. (2020.03.27 신설)
 - 1. 감 사 위 원 회
- ② 각 위 원 회 의 구 성, 권 한, 운 영 등 에 대 한 세 부 사 항 은 이사회 의 결 의 로 정 한다. (2020.03.27 신설)
- ③ 위 원 회 에 대 해 서 는 제 41 조, 제 42 조 및 제 43 조 의 규 정 을 준 용 한다. (2020.03.27 신설)

제 44 조(이사 의 보 수 와 퇴 직 금)

- ① 이사 의 보 수 는 주 주 총 회 의 결 의 로 이 를 정 한다. (2020.03.27 개정)
- ② 이사 의 퇴 직 금 의 지 급 은 주 주 총 회 결 의 를 거 친 임 원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에 의 한다. (2020.03.27 개정)

제 45 조(고 문)

이 회사 는 이사회 결 의 로 고 문 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감 사 위 원 회

제 45 조의 2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(2020.03.27 신설)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(2020.03.27 신설)
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(2020.03.27 신설, 2025.12.01 개정)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(2021.01.05 신설, 2025.12.01 개정)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(2021.01.05 신설)
-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(2020.03.27 신설, 2025.12.01 개정)
- ⑦ 독립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신설, 2025.12.01 개정)
-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 (2021.01.05 신설)
-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(2021.01.05 신설, 2025.12.01 개정)

제45조의3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(2020.03.27 신설)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(2020.03.27 신설)
-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2020.03.27 신설)
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(2020.03.27 신설)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 (2020.03.27 신설)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 (2020.03.27 신설)
-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 (2020.03.27 신설)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 (2020.03.27 신설)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 (2020.03.27 신설)

제45조의4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신설)

제 7 장 계 산

제 46 조(사업년도)

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(1991.08.27 개정)

제 47 조(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)

-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대차대조표
 - 2. 손익계산서
 -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. (2020.03.27 개정)
-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(2012.03.23 신설)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개정)
- ④ 제 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승인할 수 있다. (2012.03.23 신설)

1.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(2020.03.27 개정)
-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 (2020.03.27 개정)
-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(2012.03.23 개정)
-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(2012.03.23 개정)

제 47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(2020.03.27 개정)

제 48 조(이익금의 처분)

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49 조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을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(2012. 03.23 개정)
-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지급한다.

제 49 조의 2(중간배당)

- ① 이 회사는 7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(2019.03.29 개정)
-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
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(2012.03.23 개정)
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(2012.03.23 신설)
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
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 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50 조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51 조(보칙)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제 2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9 조, 제 10 조, 제 11 조, 제 21 조, 제 21 조의 2, 제 38 조의 3, 제 39 조, 제 42 조, 제 47 조, 제 49 조, 제 49 조의 2 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(1996 년 10 월 1 일)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(보통주식배당률+ 3%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)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신주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)

(1) 이 정관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신주를 제 3 자에게 발행 및 배정하는 경우, 그와 같이 발행 및 배정된 주식의 "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"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(2) 이 정관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및 배정하는 경우, 그와 같이 발행 및 배정된 주식의 "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"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제 33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7 조, 제 18 조, 제 19 조, 제 20 조, 제 22 조의 2 및 제 22 조의 3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제 34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시점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제 40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시점부터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 36 조 제 4 항, 제 38 조의 3 제 1 항, 제 45 조의 2 제 3 항, 제 45 조의 2 제 5 항, 제 45 조의 2 제 6 항, 제 45 조의 2 제 9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며, 제 33 조 제 1 항 중 독립이사의 이사 총수에 대한 비율에 관한 사항은 2027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